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4
----------	------

2016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2.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6. 8. 16.
3.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경환 복지본부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는 지역 장애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보조기구 맞춤 제작·개조, 임대, 수리 등)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시설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16. 12. 31)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 시설규모 : 연면적 223.48㎡(전시체험장, 제작실, 소독세척실, 사무실, 창고)
※ 6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2, 사회복지사 1)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7. 1. 1.~2019. 12. 31)
- 위탁사무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개조,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훈련, 사례관리, 후원연계
 -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DB 구축·관리, 지역센터 연계
 -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소요예산 : 270,917천원(2016년 수준, 전액 시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최초위탁 : 2008. 12. 5~2010. 12. 31(2년 1월)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 2차재계약 : 2011. 1. 1~2013. 12. 31(3년)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 3차재계약 : 2014. 1. 1~2016. 12. 31(3년)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구입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 2016. 12. 30. 시행 예정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제9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의 취지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보조기구 맞춤 제작·개조, 임대, 수리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이나 2016.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민간위탁 이력

구 분	1차	2차	3차
수탁기관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기 간	'08. 12. 5~'10. 12. 31 (2년 1월)	'11. 1. 1~'13. 12. 31 (3년)	'14. 1. 1~'16. 12. 31 (3년)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2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필요성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12. 30. 시행 예정)의 기본이념과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총 3개소의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중 하나로, 각 센터는 서비스권역별로 8~9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서센터
수탁법인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 및 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 (223.48㎡)	노원구 덕릉로 70 가길 96 (183.48㎡)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179㎡)
지원인력	5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5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5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서비스권역	8개 자치구 (강동, 송파, 강남, 용산, 서초, 광진, 성동, 중구)	9개 자치구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성북, 중랑, 동대문, 종로)	8개 자치구 (강서, 마포,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협약기간(횟수)	‘14. 1. 1. ~’16. 12. 31 (3차)	‘14. 8. 1 ~’16. 12. 31 (1차)	‘14. 12. 27 ~’16. 12. 31 (1차)

3 민간위탁의 타당성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 12. 30. 시행 예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²⁾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구입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³⁾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은 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보조공학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개조, 구입비 지원
- ②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훈련, 사례관리, 후원연계
- ③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DB 구축·관리, 지역센터 연계

2)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④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상기와 같이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맞춤 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은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44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는 지역 장애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보조기구 맞춤 제작·개조, 임대, 수리 등)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 시설규모 : 연면적 223.48㎡(전시체험장, 제작실, 소독세척실, 사무실, 창고)
 - 운영인력 : 6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2, 사회복지사 1)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4. 1. 1~2016. 12. 31)
- 위탁사무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개조,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훈련, 사례관리, 후원연계
 -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DB 구축·관리, 지역센터 연계
 -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소요예산 : 270,917천원(2016년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최초위탁 : 2008. 12. 5~2010. 12. 31(2년 1월)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 2차재계약 : 2011. 1. 1~2013. 12. 31(3년)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 3차재계약 : 2014. 1. 1~2016. 12. 31(3년)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구입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최인섭(☎ 2133-7364)